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황운하 · 정춘생 · 차규근
이해민 · 강경숙 · 김준형
신장식 · 서왕진 · 김선민
김재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,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,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(안 제24조 및 제43조).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검사는”을 “사법경찰관은”으로, “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”를 “검사에게”로, “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”를 “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,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”로, “받을 수 있다”를 “청구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법경찰관은”을 “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”로, “관계 서류를 검사”를 “해당 명령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검사는”을 “사법경찰관은”으로, “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”를 “검사에게”로, “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”를 “따른 처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,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	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
① <u>검사는</u>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<u>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</u>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<u>처분을</u> 받을 수 있으며, <u>사법경찰관은</u> <u>검사에게 신청하여</u> <u>검사의 청구로</u> 해당 처분을 <u>받을 수 있다.</u>	① <u>사법경찰관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검사에게</u> -- ----- ----- <u>처분의</u> <u>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, 검사</u> <u>는 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</u> <u>없이 지방법원 판사에게</u> ---- ----- <u>청구하여야</u> <u>한다.</u>
② <u>사법경찰관은</u>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관계 서류를</u> <u>검사에게</u> 송부하여야 한다.	② <u>검사는</u> 제1항에 따른 <u>청구</u> <u>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해당 명령</u> <u>에 관한 서류를 신청한 사법경</u> <u>찰관</u> -----.
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<u>지방검찰청</u>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	③ ----- ----- <u>지방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② (생략)	<u>판사에게 해당 처분을 청구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	---